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7.(월) 10:00~

# 조례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등 4건 =

산업건설위원회

## 【 목 차 】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 2
2.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3.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4.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11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2. 13.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2.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2월 24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구직자(求職者)에 적용함
-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
-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1일 8시간이상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농산물가공 포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

○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재해보험, 안전용품제공 등

○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농작업 참여 구인신청은 2~3일 전에, 농작업 참여자의 교통비신청은 농작업 완료후에 신청

- 지원금 지급은 교통비는 1개월 단위로 지급, 재해보험은 작업일 전에 가입

○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보조금 관련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이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농촌인력부족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작업 인력난 해소와 농작업 일자리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 등을 볼 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2011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군은 전체 26,983세대의 41%인 11,129세대가 농가수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2. 13.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2.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2월 24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 기금의 사용용도를 거창군 조례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함(안 제3조)
  -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조정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함(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의 범위에서만 재난 관리기금 사용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우리군은 지난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 관련조례를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해오고 있는 바,
- 나. 지난해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맞추어 안 제3조에서 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토록 하는 의무예치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임.
- 다.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 라.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2. 13.

나. 발 의 자 : 백범영 · 조기원 · 김재권 · 이성복 의원

다. 회부일자 : 2012. 2.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2월 24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거창군내의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적 조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도로조명시설의 신청, 타당성 검토, 계획수립 시행(안 제4조, 제5조)
  - 신청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청함
  - 읍·면장은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요청함
  - 군수는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설치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 시행함.(안 제5조)
- 가로등·보안등의 설치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 가로등 디자인을 통일함.(안 제8조)
- 보안등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점검주기 및 항목을 정하여 유지관리함(안 제10조)
  - 수시 : 주1회 이상, 점등·소등·고장발생 사항 점검
  - 정기 : 년1회 이상, 등주·점멸기·선로 절연과 접지사항(누전확인)
    - 타시설물과의 상관관계, 감전사고 발생요인 유무확인
- 훼손시설 및 위반행위 원인자 복구 또는 변상함(안 제11조, 제12조)
- 가로등 및 보안등은 일몰·일출시간에 점등·소등함(안 제13조),
- 유지관리의 책임은 군수(주관부서장)가 됨(안 제14조)
-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에 의해 도로조명시설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2011. 11월 기준 6,170여등)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볼 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도로조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조명시설 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2. 13.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2.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2월 24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제정하여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
- 재원조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회원의 회비, 국가·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지원금, 위탁사업 수수료 등

-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등
- 수익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
-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 시행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제출
-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안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농정기구 설립 계획에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볼 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시 거창군 농업의 발전 및 농업인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중,

- 제4조 제1호 “농어업 관련 군 시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로 수정.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상정안)	수 정 안
<p>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농어업 관련 <u>군 시책(예산 사업 포함)</u>에 관한 자문 및 건의</p> <p>2. ~ 12.(생략)</p>	<p>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농어업 관련 <u>군 시책</u>에 관한 자문 및 건의</p> <p>2. ~ 12.(원안과 같음)</p>